

“

연구자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제도**

**설명서**

”

2025. 2.



“

연구자를 위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제도 설명서

”



# Contents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제도 미리 알아보기	1
01. 제재제도 설명서 소개	5
02. 제재처분의 개념 및 주요 용어	6
03. 연구자가 주의해야 할 제재처분 사유	8
04. 제재처분 절차 바로 알기	16
05. 제재처분 재검토란?	19
06. 제재처분 사후관리	20
부록	21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제도

## 미리 알아보기

Q1.



제재처분이란 무엇인가요?

국가연구개발활동(국가R&D 과제 수행 등)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거나 제재처분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sup>㉠</sup>받거나 '제재부가금'<sup>㉡</sup>을 내야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 ① **참여제한** 참여제한 처분에 따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모든(전 부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
- ② **제재부가금** 처분에 따라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과

A1.



Q2.



제재처분 사유는 무엇인가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6개의 항목이 제재사유입니다.

- ① 연구수행 **과정과 결과의 극히 불량**
- ② **협약 불이행**에 따른 과제 **변경·중단**
- ③ **부정행위**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 포기**
- ⑤ (연구개발기관)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 **미납**
- ⑥ (연구개발기관) **회수금 미납**

A2.



Q3.



### 제재처분 사유 중 부정행위는 무엇인가요?

국가연구개발에서 '부정행위'란 혁신법 제31조 제1항이 정의하는 여섯 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위조·변조·표절 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 ②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 ③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 성과 소유
- ④ 보안대책위반, 보안사항의 누설 및 유출
- ⑤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
- ⑥ 국가연구개발활동 건전성 저해 행위

A3.



Q4.



### 제재처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에 대한 조사·검증이 수행되고 제재처분 평가단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검토 내용은 해당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에 사전통지 및 확정통보 됩니다.

다만, 사전통지 받은 제재처분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제재처분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4.



제재처분 절차

제재처분 사유 발생	조사·검증	제재처분 검토	사전통지
제보 접수 등	부정행위 등 조사·검증	제재처분 종류·수준 등 검토	제재처분 검토결과 사전통지
제재처분 확정 통보	제재정보 등록·공개	사후관리	
제재처분 종류·수준 결정·통보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해당 처분 공개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납부 등	

※ 사전통지를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제도 미리 알아보기

Q5.



## 제재처분 재검토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전통지를 받은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전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부처)\*에 '제재처분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재검토 주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연구자권익보호위원 중 선택

A5.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란?

연구자의 권익 보호와 제재처분의 일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설립된 위원회입니다. 제재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연구자가 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한 경우, 위원회에서 제재처분 재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적절성을 심의하고 기존 사전처분에 대해 유지, 감경, 면제 등의 의견을 권고합니다.

Q6.



## 제재처분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제재처분은 중앙행정기관이 처분 내용을 확정 통보하는 즉시 시행됩니다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즉시 모든 수행 중인 과제와 신규과제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또한, 처분 받은 제재부가금·환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처분 내용은 통합정보시스템에 기록되어 관리되며, 규정에 따라 일부 제재처분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됩니다.

A6.



Q7.



## 제재부가금·환수금은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하나요?

제재부가금·환수금은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안내된 납부방식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 미납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절차가 진행되며, 미납 기간에는 신규과제 선정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A7.



Q8.



## 제재부가금 외에 환수금은 무엇인가요?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 개발비는 환수할 수 있으며, 이를 환수금이라 합니다.

환수금은 제재처분과 마찬가지로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과됩니다.

A8.



### 연구개발비의 회수와 환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연구비 집행 후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비 집행 금액이 불인정 되는 경우 연구개발비 회수에 해당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에서 정한 연구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모두 위반하여 사용된 금액은 환수됩니다.

연구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모두 위반하여 연구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환수와 별도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1

## 제재제도 설명서 소개

### » 목적

- 연구자들이 제재처분의 구성 및 절차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별권3)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재처분 관련 조항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	시행령
부정행위의 금지(법 제31조), 제재처분 사유 (법 제32조), 제재처분의 절차(법 제33조), 제재처분의 사후관리(법 제34조)	부정행위(시행령 제56조), 부정행위 검증(시행령 제57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시행령 제59조),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시행령 제60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시행령 제61조),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시행령 제62조), 제재처분의 사후관리(시행령 제63조)

### » 구성

- 2장 제재처분의 개념 및 주요 용어
- 3장 연구자가 주의해야 할 제재처분 사유
- 4장 제재처분 절차 바로 알기
- 5장 제재처분 재검토란?
- 6장 제재처분 사후 관리

## 02

## 제재처분의 개념 및 주요 용어

## » 제재처분이란?

- 혁신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있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일정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를 제한**받거나 금전적으로 **부가금을 납부**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 **참여제한** 귀책사유가 있는 대상자에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
- **제재부가금** 귀책사유가 있는 대상자에게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과

제재처분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거야?



‘참여제한’ 처분을 받게 되면

**참여제한 기간**동안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할 수 없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과제도 그 기간동안에는 참여할 수가 없게 돼.

또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게 되면 **부과된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해

## 🔍 들여다보기

## • 국가연구개발활동의 범위

연구개발 관련 수요조사에 대한 수요 제출, 국가연구개발과제 사전 기획에 참여, 국가연구개발과제 공모에 신청,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평가단, 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 참여제한의 효력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참여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모든(전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지원이 제한되며 현재 참여 중인 모든(전 부처)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참여를 중지해야 합니다.

## » 제재처분 대상자

- 귀책 사유가 있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연구개발기관 소속임직원이 제재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

###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 ●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하는 과제를 의미합니다.

## » 제재처분 주체

- 제재처분 주체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며, 일부 업무\*\*는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 \*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장을 의미합니다.
  - \*\* 제재처분평가단 구성·운영, 연구개발비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미납 시 독촉·징수 등

## » 연구개발비 회수금

- 연구개발과제의 정산 결과에 기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이 불인정하거나 잔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회수'됩니다.
- 환수와는 다르며, 회수금의 산정은 제재처분이 아닙니다.
  - \* 단, 회수금을 미납할 경우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연구개발비 환수

- 연구개발과제에서 사용 용도와 사용 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그 위반 금액은 '환수'됩니다.
- 환수는 제재처분(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과는 별도의 처분입니다.

## 03

## 연구자가 주의해야 할 제재처분 사유



### » 제재처분 사유

-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어겨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 ▶ 부정행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6조 제1항)

- 혁신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
  -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 연구개발성과 소유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
-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사항을 누설·유출하는 행위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 혁신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위협
-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증명자료 위조·변조, 사용내역 거짓 보고 등)
- 생명윤리를 지키지 않는 행위
- 안전한 연구실 환경을 조성하지 않은 행위

혁신법 제31조 제1항		세부기준	비고	
제1호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표시	혁신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연구부정행위	
제2호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	혁신법(제13조)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연구비 부정/연구개발용도 외 사용	일반 부정 행위
제3호	성과소유위반	혁신법(제16조 제1-3항)	개인 또는 제3자 명의 특허출원 등	
제4호	보안대책위반	혁신법(제21조 제1항~2항)	국가 R&D 보안대책 위반 또는 보안사항 외부 유출	
제5호	연구개발과제 부정 신청 수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수행	신청 또는 수행 부정	
제6호	연구개발활동 건전성 저해 행위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호: 조사방해 제2호: 연구비 사용 건전성 저해 제3호: 생명윤리 위반 제4호: 연구실 안전 위반	
		* 혁신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4. 연구자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길잡이, p.10.

## » 연구수행 단계별 주의할 제재처분 사유

### 연구 설계 및 계획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또는 수행

### 연구 수행

- 법 또는 협약 상 의무 위반
-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반
- 보안대책 위반
- 보안사항 국내·외 누설 및 유출
-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 저해 행위

### 연구결과 평가 및 성과 확산

- 수행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 위조·변조·표절 및 부당한 저자 표시
- 성과의 소유·관리 위반
- 연구개발과제 회수금 미납
- 기술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수익 미납

##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또는 수행

-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 선정되거나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신청 자격이 없는 사실을 속이고 과제를 신청하거나, 신청 과정에서 각종 위법한 방법을 동원하거나, 혹은 연구개발계획서의 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을 포함합니다.

### ☑ 제재처분 기준

- **참여제한** : 2년
- **제재부가금**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100%(기관), 20%(개인)

### 📢 예시와 함께 생각해보기<sup>1</sup>

-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과제가 이미 수행된 다른 사업의 과제와 중복인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와 타 사업에서 수행한 다른 사업 과제의 사업계획서와 최종보고서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 과제 제안서에 제시한 일부 실적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후, 검증·조사를 통해 고의성이 확인되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1 본문의 [예시와 함께 생각해보기]는 각 제재처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로, **실제 제재처분 절차에서 증빙자료 및 근거 등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 법 또는 협약상 의무 위반

-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또는 과제 등의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연구책임자의 변경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특별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 위반행위의 확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제재처분 기준

- 참여제한 : 2년
- 제재부가금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100%(기관), 20%(개인)

#### 🗣 예시와 함께 생각해보기

- 연구개발기관이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협약을 체결한 이후, 연구개발비를 수령할 때 납부하기로 약속한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계속 납부하지 않았다. 이후 특별평가에서도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특별평가 검토결과에 따라 과제가 중단되었다.

##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포기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이전에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다만, 특별평가 등을 통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는 경우에는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예시) 부처/전문기관의 검증·조사 등 평가 결과, 수행 포기에 대한 해당 연구자/연구개발기관의 귀책사유가 없음으로 판정된 경우

### ☑ 제재처분 기준

- 참여제한 : 2년
- 제재부가금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100%(기관), 20%(개인)

#### 🗣 예시와 함께 생각해보기

- 직위해제로 인한 과제 수행포기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도중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직위 해체되었다. 본인의 귀책에 따른 징계로 인한 퇴직은 과제 수행포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 ▶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반

-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모두 위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예시) 연구활동비를 인건비나 장비 운영비 등의 경비에 사용하는 경우 등

\*\* (예시) 연구수당 한도를 초과하여 계상하고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등

- 사용기준만 위반한 경우는 제재처분 대상이 아니며, 연구개발비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용용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기준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실수로 인한 증빙서류 미비와 같은 경미한 규정 위반은 제재처분 대상이 아니며, 정산을 통한 회수가 진행됩니다.
- 학생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는 행위, 거래내역 및 금액 등을 속이는 행위, 계열사 및 자회사나 특수 관계 간의 거래행위, 횡령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학생연구원 인건비 및 연구수당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반은 가중처분 대상입니다.

### ☑ 제재처분 기준

- **참여제한** : 위반 금액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에서 최대 10년 이내
- **제재부가금** : 위반 금액의 전액 이상(위반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

### 🗣 예시와 함께 생각해보기

-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한 경우

소관중앙행정기관의 감사 결과,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이던 00개의 과제에서 소속 학생연구원 총 00명에게 지급된 인건비 및 연구수당을 연구책임자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 보안대책 위반

-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연구 개발성과 등 주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립한 보안대책을 위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 제재처분 기준

- **참여제한** : 2년
- **제재부가금**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100%(기관), 20%(개인)

## ▶ 보안사항 국내 누설 및 유출

-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 제재처분 기준

- 참여제한 : 2년
- 제재부가금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100%(기관), 20%(개인)

## ▶ 보안사항 국외 누설 및 유출

-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로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 제재처분 기준

- 참여제한 : 5년
- 제재부가금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250%(기관), 50%(개인)

## ▶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 저해 행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1호-5호가 정의하는 행위 외의 다양한 부정행위 및 관련 행위들을 포괄합니다.

-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위협, 연구개발비 내역 허위보고 및 증빙자료 위·변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에서 제68조\*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시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안전 및 복지보호 등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한 벌칙

\*\*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등에 따른 벌칙

### ☑ 제재처분 기준

- 참여제한 : 2년
- 제재부가금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100%(기관), 20%(개인)

## ▶ 수행과정 및 결과 극히 불량

-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결과,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모두 '극히 불량' 판정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극히 불량'이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입니다.

### 🔍 들여다보기

#### • 국가연구개발과제 평가에서의 '불량'

연구개발 결과물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미비한 상황 등의 경우 '불량' 또는 '극히 불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 제재처분 기준

- **참여제한** : 2년
- **제재부가금**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100%(기관), 20%(개인)

### 🗨️ 예시와 함께 생각해보기

#### • 연구개발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결과가 불량한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뒤 평가에서 성능지표가 미달성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시험관련 데이터 자료와 연구노트의 내용이 부실하여 과제 성과와 연구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연구계획서에서 제출하기로 한 공인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극히 불량으로 판정되었다.

## ▶ 연구개발 자료·성과의 위조·변조·표절 및 부당한 저자표시

### • 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정행위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 자료나 성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변조 : 연구시설·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성과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 일반적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성과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 제재처분 기준

- **참여제한** : 3년 이내
- **제재부가금**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150%(기관), 30%(개인)

### 🔊 예시와 함께 생각해보기

#### • 출처 표기 없이 보고서 원고를 동원해 논문 작성에 활용한 경우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연구진실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구자가 최근 게재한 논문의 일부분이 과거 작성된 타 보고서의 원고와 일치하며 적절한 인용 표기가 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다른 공동저자의 표절행위로 판명되었으나 이에 대해 교신저자로서 연구 전반의 진실성 확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었다.

###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위반

- 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성과를 기관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 제재처분 기준

- 참여제한 : 3년
- 제재부가금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150%(기관), 30%(개인)

### ▶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 미납

-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결과에 따른 회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금액의 크기와는 무관합니다.

#### ☑ 제재처분 기준

- 참여제한 : 납부시까지
- 제재부가금 : 없음

### ▶ 기술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수익 미납

-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에게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 혹은 일부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금액의 크기와는 무관합니다.

#### ☑ 제재처분 기준

- 참여제한 : 납부시까지
- 제재부가금 : 없음

## 04

## 제재처분 절차 바로 알기

연구자	
제재처분 사유 조사 및 검증	이의신청을 포함한 조사 및 검증 절차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사유에 대한 조사 검증 수행 *필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조사 가능
제재처분 평가단 검토	(전문기관)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 위원 구성
제재처분 사전통지	재검토 신청 여부 및 재검토 수행주체 선택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 제재처분 대상자에게 제재처분 내용 통보
제재처분 확정통보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 (90일 이내)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 제재처분 내용을 확정하여 대상자에게 통보
제재처분 등록 및 공개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일부 경우는 공개)
납부 및 사후관리	제재부가금 등 납부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 제재정보 및 납부금 관리

※ 사전통지를 받은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제재처분 재검토 신청 가능

### » 제재처분의 사유 조사/검증

- 부정행위가 발생하여 이를 인지하게 되거나(제보 등), 적발하면 연구개발기관은 자체규정에 따라 조사·검증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 보고합니다.
- 부정행위 이외의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은 조사·검증이 없더라도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구성한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제재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제재처분 평가단 검토

- 제재처분평가단이 구성되어 제재처분 사유의 중대함,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제재대상자,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 🔍 들여다보기

#### • 제재처분평가단은 누가 어떻게 구성하나요?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분야, 법률분야, 회계분야 등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단을 구성합니다.
- 단, 다음과 같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3. 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 제재처분 사전통지

- 제재처분 사전통지는 제재처분 평가단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처분 내용과 이의 신청 안내를 공식적인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 🔍 들여다보기

#### • 사전통지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제재처분 사전통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제재처분 재검토

- 사전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재대상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중 어떤 주체로부터 재검토를 받을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 재검토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전통지 내용이 제재처분으로 확정됩니다.

### 🔍 들여다보기

####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가 무엇인가요?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재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재검토 신청을 받은 경우 제재처분재검토회의를 개최합니다.

- 제재대상자는 제재처분과 관련한 소명이 가능하며, 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심의 의견을 통보합니다.

## » 제재처분 확정통보

-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관련자에게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 제재처분 대상자가 재검토를 신청한 경우 재검토 심의 결과 등을 고려합니다.

## » 제재정보 등록 및 공개

- 확정 통보된 내용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됩니다.
- 참여제한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지급된 정부 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등에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됩니다.
  - \*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 내용,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제재대상자의 이름과 국가연구자번호,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입니다.

## » 제재부가금·환수금 납부 및 사후관리

-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 들여다보기

#### • 국세 강제징수

- 체납자로부터 미납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여 제재부가금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 05

# 제재처분 재검토란?

### » 제재처분 내용의 재검토 요청

- 제재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 받은 제재대상자는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시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기한** :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제출처** : 소관 부처(중앙행정기관)

### » 재검토 절차



\* 재검토 요청자가 과제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중 재검토 수행 주체 선택 가능

## 06

# 제재처분 사후 관리

### » 참여제한

- 참여제한 처분이 최종 통보되는 즉시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
  - 처분의 확정통보는 문서로 하며 문서를 송달받은 즉시 처분의 효력 발생

### » 제재부가금·환수금 납부

-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
  - 납부 기한, 방식 등은 소관 부처에서 통지



## 부록

### ● 제재처분 재검토 요청서 서식

\* 실제 사용 시에는 소관부처에서 제공하는 양식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재검토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 접수번호란과 접수일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출인	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직장 또는 자택)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휴대전화 / 직장전화		
	전자우편		
[ ] 대표자	성명		
[ ] 관리인	주소(직장 또는 자택)		
[ ] 선정대표자	소속		
[ ] 대리인	휴대전화 / 직장전화		
(해당 시 작성)	전자우편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사전통지 문서명			
사전통지를 통보받은 날	0000. 00. 00.		
증거 서류			
재검토 희망 기관(택일)	<input type="checkbox"/>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소관 중앙행정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재처분 및 환수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 또는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 2. 재검토 요청 의견제출 취지 및 이유(별지), 그 밖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	--

### 처리 절차



###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1. 제출인

- 1) 성명 또는 기관명 :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합니다.
- 2) 주소 : 제출인의 거주지(주택, 직장 모두 가능) 또는 소재지 주소를 기재합니다.
- 3)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 제출인의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2.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대리인(해당 시 작성)

- 1) 대표자 : 제출인이 연구개발기관일 경우 기관의 대표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 2) 관리인 : 제출인이 연구개발기관이고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관리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 3) 선정대표자 : 여러 명의 제출인이 공동으로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면서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4) 대리인 : 제출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 3.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 제재처분을 사전통지 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4. 사전통지 문서명 :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 5. 사전통지를 통보받은 날 :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가 제출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재합니다.

#### 6. 증거 서류 : 재검토 요청 의견 및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증거물 등의 제목 또는 명칭을 나열하여 작성합니다.

#### 7. 재검토 희망 기관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와 소관 중앙행정기관 중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자가 재검토를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합니다.



###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연구개발과제명 :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번호 :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된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연구개발기관명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가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할 당시에 소속한 연구개발기관명 또는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기간
  - 1) 전체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 2) 해당 단계 :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비
  - 1) 전체 :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2) 해당 단계 :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7. 제재처분 및 환수 구분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통지 받은 제재처분의 종류를 선택하고, 참여제한일 경우 사전통지 받은 처분 기간을,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일 경우 사전통지 받은 처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8. 사전통지 문서명 :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9. 제재처분 개요 :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이에 대해 적용된 제재사유, 이에 따라 사전통지 받은 제재처분의 내용 등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10.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의 경우 :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 혹은 사건에 대한 내용 및 발생 경위를 기재합니다.
11. 재검토 요청 의견 요지 :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에 대한 재검토 요청 사항을 기재합니다.
12. 의견 제출사유 :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합니다.



2025. 2.